

코레일 '근무 중 음주'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

< 보도 내용 (SBS, 10.11) >

◆ [단독] 술 마시고 열차 운행한 직원들...코레일은 '식구 감싸기'

- 지난 5년간 음주적발된 코레일 직원 28명 가운데 업무 중 술을 마신 13명은 철도안전법 위반 소지
- 코레일이 법 위반 사실을 철도경찰에 알리지 않아 11명은 자체 징계, 철도경찰에 직접 적발된 2명만 형사처벌 또는 재판 중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기관사 등 다수의 코레일 직원이 음주상태로 근무했음에도 코레일 자체 징계로 끝나는 등 숨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.

* 철도종사자가 근무 중 음주를 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, 3,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

** 코레일은 음주근무 재발방지(필요시 관련기관 통보 등)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의무

□ 국토교통부는 근무 중 음주와 관련하여 철도안전감독관,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승무적합성 검사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적절성과 코레일 자체 징계 적절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, 철도경찰을 통해 철도 종사자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.

- 아울러, 철도종사자 근무 중 음주에 대한 형량을 상향*하고, 근무 중 음주가 적발될 경우 철도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를 의무화(미 이행시 과태료도 검토)하는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.

* (예시) 현행 최대 3년 → 9년 이하 (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자는 최대 6년 이하 징역)

□ 국토교통부 박재순 철도안전정책관은 “수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종사자가 음주상태로 근무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문제”라면서, “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	김강문 (044-201-4602)